

## ■ 청약 일정

구분	신청일자	접수장소 및 시간	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노부모 특별공급	2024.11.18.(월)	청약Home 인터넷 09:00 ~ 17:30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(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검색)
		사업주체 견본주택 10:00 ~ 14:00	•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(만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등)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 * 접수시 모든 구비서류 제출(입주자모집공고 참조)

## ■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59A	59B	74	84	합계
노부모 특별공급	9	6	6	1	22

## ■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)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</li> <li>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한 분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: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/ul>
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</li> <li>• ①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파주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수도권(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, 경기도) 거주자)</li> <li>• ②가점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</li> <li>- 가점 산정기준표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나목)</li> </ul>
----------	--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
		1명	10	5명	30
		2명	15	6명 이상	35
		3명	20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
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	
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

- ③청약통장 가입기간: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-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
\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
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</li> <li>•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li> </ul>
----	---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,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